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4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이정문 · 윤준병 · 문진석  
이인영 · 박민규 · 이재관  
이강일 · 전용기 · 조인철  
김용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 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묘역임.

그러나 오랜 기간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에 머물러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묘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최근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비전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되며,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던 효창공원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이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

운동 성지로 격상하되, 그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국립효창독립공원

제5조제1항제5호 중 “국립신암선열공원:”을 “국립신암선열공원·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 8. (생략)</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p>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p> <p>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5. <u>국립신암선열공원</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p> <p>② ~ ⑦ (생략)</p>	<p>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국립효창독립공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p> <p>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립신암선열공원 · 국립효창독립공원</u>: ----- -----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